

의안번호	제472호
의결 연월일	2023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1월 17일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17일

발 의 자 : 오영탁, 노금식, 최정훈,
김성대, 이옥규, 이태훈,
임영은

1. 개정이유

-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개정('23.5.9.)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·의결 대상 규정 신설(안 제12조)
 - － 일상적 반복적 안건으로 경미한 내용, 재난발생으로 인한 불출석,
 - －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한 특별한 사정
-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3조)
 - － 원격영상회의 방식(일부 대면)으로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며, 원격영상회의 참석도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이 가능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
규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3.11. . ~ 2023.11. .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의 수당)”을 “(위원의 수당 등)”으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서면 심의·의결 대상)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)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원격영상회의(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

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위원의 수당) ①·② (생략)	제9조(위원의 수당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12조(서면 심의·의결 대상) 위원회는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	1. 일상적·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
	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·의결할 수 없는 경우
	3.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<신설>	제13조(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)
	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원격영상회의(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

현행	개정안
<u>제12조 ~ 제18조</u> (생략)	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<u>방식으로 할 수 있다.</u> ② <u>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 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제14조 ~ 제20조</u> (현행 제12조부 터 제18조까지와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2. 16.] [법률 제19023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26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~④ (중 략)

④ 그 밖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□ 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3. 11. 10.] [대통령령 제33451호, 2023. 5. 9., 일부개정]

제13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) ① ~④ (생 략)

⑤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하거나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위원의 수당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원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, 의안의 내용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